##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02

발의연월일: 2024. 8. 7.

발 의 자: 구자근 · 김선교 · 김석기

신동욱 • 인요한 • 이만희

권영세 · 배준영 · 박준태

최은석 • 박덕흠 • 박형수

강명구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송전설비를 포함한다)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발전소등"이라 한다)를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소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	②
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7의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u>
	국산화에 관한 사항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① ~ ③ (생	이용의무화 등)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u>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u>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
	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송전설비를 포함한다)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ㆍ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발전소등"이라 한다)를 조성하
	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발전소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설비 를 사용한 자에게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